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

1) 연 1회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양육을 위한 보호자 동의서' 제출

❍ 결석 시 사전에 유치원으로 연락하지 않거나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무단결석으로 간주하여 1일차에는 담임교사가 가정으로 전화 연락 실시, 2일차에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가정방문을 실시하며 아동의 소재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

2) 2021학년도 미인정결석 유아 중 아동학대 신고 현황 제출

❍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해 유아에게 아동학대(신체·정서·성학대 및 방임) 징후가 있는지 잘 관찰하고, 유아가 사전에 연락없이 결석하는 경우 결석 당인 유아의 소재 및 안전을 파악하도록 함 (아동복지법 제22조의 2)

❍ 미인정결석 유아에 대해서는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적극 대응하고, 미인정결석 유아 중 아동학대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 즉시 보고

❍ '미인정결석 유아 조치 결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문 제출